

사회복지법인 유은(唯恩)복지재단
2020년도 3 차 임 시 이 사 회 의 록

- * 일 시 : 2020년 12월 18일 (금요일) 13:30
- * 방 법 : 전자적 방법 - 다자간 메신저(카카오톡)
코로나19 관련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 의결 관련 안내
- * 임원총수 : 이사 7명, 감사 2명
- * 참석임원 : 이 ** 대표이사, 임 ** 이사, 박 ** 이사, 장 ** 이사,
장 ** 이사, 고 ** 이사, 김 ** 이사, 이 ** 감사
- * 불참임원 : 권 ** 감사

1.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: 권 ** 사무국장이 재적 임원 총 9명 중 이사 7명 · 감사 1명 출석하였음을 게시하자 정관 제26조(이사회 의결의 개회와 의결정족수)에 의거 개회정족수가 됨에 따라 의장인 이 ** 대표이사가 사회복지법인 유은복지재단(이하 '본 재단'이라 한다) 2020년도 3차 임시이사회를 개회 선언한다.

2. 전회의록 낭독 : 전회의록은 종전 이사회에서 원안대로 채택되었기에 낭독을 생략한다.

3. 안건상정 : 권 ** 사무국장이 게시한 이 ** 의장이 본 재단 및 시설의 운영에 따른 아래 각 호의 안건을 일괄상정하자 장 ** 이사의 동의와 김 **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 이사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일괄상정할 것을 의결한다.

제1호 : 2020년도 시설일반회계(수익사업, 시도보조금, 후원금) 추가경정 예산(안) 심의 · 의결의 건

제2호 : 2021년도 법인회계 및 시설일반회계(수익사업, 시도보조금, 후원금) 예산(안) 심의 · 의결의 건

제3호 : 임원개선(이사 및 감사)에 관한 심의 · 의결의 건

제4호 : 보통재산(기계기구류, 비품) 취득에 관한 심의 · 의결의 건

제5호 : 기타 안건 심의 · 의결의 건.

4. 안건 심의 · 의결

1) 안건 제1호 : 2020년도 시설일반회계(수익사업, 시도보조금, 후원금) 추가경정 예산(안) 심의 · 의결의 건

이 ** 의장이 상정하여 권 ** 사무국장이 게시한 [별첨자료 1, 1-1, 1-2]의 2020년도 법인회계 및 시설일반회계(수익사업, 시도보조금, 후원금) 추가경정 예산(안)에 관하여, 이를 개별적으로 검토케 하고 심의한 결과, 별첨 원안대로 받기로 박 ** 이사의 동의와 김 **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 이사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.

2) 안건 제2호 : 2021년도 법인회계 및 시설일반회계(수익사업, 시도보조금, 후원금) 예산(안) 심의 · 의결의 건

이 ** 의장이 상정하여 권 ** 사무국장이 게시한 [별첨자료 2, 2-1, 2-2, 2-3]의 2021년도 법인회계 및 시설일반회계(수익사업, 시도보조금, 후원금) 예산(안)에 관하여, 이를 개별적으로 검토케 하고 심의한 결과, 별첨 원안대로 받기로 장 ** 이사의 동의와 장 **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 이사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.

3) 안건 제3호 : 임원개선에 관한 심의 · 의결의 건

이 ** 의장이 상정하여 권 ** 사무국장이 게시한 [별첨자료 3]의 본 재단 대표이사인 이 ** 씨가 2021년 1월 20일 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임시의장 선임을 제안하자 임 ** 이사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하기로 김 ** 이사의 동의와 박 **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한 후 (이때 본 안건과 관련된 이 ** 씨에게 잠시 퇴장하게 하다) 임시의장 임 ** 이사가 회의를 주재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, 이사 ** 씨를 임기 3년인 2021년 1월 21일부터 2024년 1월 20일까지 본 재단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할 것을 김 ** 이사의 동의와 장 ** 이사의 재청으로

참석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.

이** 의장이 상정하여 권** 사무국장이 게시한 [별첨자료 3]의 본 재단 이사인 박** 씨가 2021년 1월 20일 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본 안건을 (이때 본 안건과 관련된 박** 씨에게 잠시 퇴장하게 하다) 심의한 결과, 이사 박** 씨를 임기 3년인 2021년 1월 21일부터 2024년 1월 20일까지 본 재단 이사로 선임할 것을 장** 이사의 동의와 임**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.

이종만 의장이 상정하여 권** 사무국장이 게시한 [별첨자료 3]의 본 재단 감사인 권** 씨가 2021년 1월 10일 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본 안건을 (이때 본 안건과 관련된 권** 씨에게 잠시 퇴장하게 하다) 심의한 결과 감사 권** 씨를 임기 2년인 2021년 1월 11일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 본 재단 감사로 선임할 것을 장** 이사의 동의와 박**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.

이** 의장이 상정하여 권** 사무국장이 게시한 [별첨자료 3]의 본 재단 외부추천 감사인 이** 씨가 2021년 1월 10일 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본 안건을 (이때 본 안건과 관련된 이** 씨에게 잠시 퇴장하게 하다) 법인관련 규정[별첨자료 3-1(안동시 노인장애인복지과-37103)]에 의거 심의한 결과 감사 이** 씨를 임기 2년인 2021년 1월 11일부터 2023년 1월 10일까지 본 재단 외부추천 감사로 선임할 것을 장** 이사의 동의와 임**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자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.

4) 안건 제4호 : 보통재산(기계기구류, 비품) 취득에 관한 심의 · 의결의 건

이** 의장이 상정하여 권** 사무국장이 게시한 [별첨자료 4, 4-1]의 '본 시설'의 보통재산(기계기구류, 비품) 취득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검토케 하고 심의한 결과 별첨 원안대로 받기로 장** 이사의 동의와 박** 이사의 재청에 따라 참석 이사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.

5. 회의특채택 : 이상으로 심의·의결된 안건들의 정확무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** 의장이 작성된 회의록을 권 **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게시하게 한 후 수정 보완할 것이 없으므로 그대로 채택할 것을, 장 ** 이사의 동의와 김 **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 이사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다.

6. 폐회선언 : 이상으로 모든 안건이 원만히 심의·의결되었으므로 폐회할 것을 장 ** 이사의 동의와 장 ** 이사의 재청으로 참석 이사 전원이 이의가 없어 만장일치로 의결하고, 이 **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.

* 기록자 : 사무국장 권

(인)

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.

2020년 12월 18일

사회복지법인 유은(唯恩)복지재단

대표이사 이



이 사 임



이 사 박



이 사 장



이 사 장



이 사 김



이 사 고



감 사 이

